

2026년 LH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6년 LH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8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주택기술처

1. 사업개요

- ☐ (사업명) 2026년도 LH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6.12.31일까지
- ☐ (지원분야) 고도화(“중간1” 수준 이상으로 구축)
※ (스마트공장 인증단계) ICT 미적용 → 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
- ☐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AI,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 (지원규모) 6.0억원(12개 기업, 기업당 0.5억원 지원)

구분	LH(50%)	정부(30%)	중소기업(20%)	합계	비고
기초	0.5억원	0.3억원	0.2억원	1.0억원	
총계	6.0억원	3.6억원	2.4억원	12억원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기반 건설산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당 지원횟수는 2회로 한정
(LH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회 초과 참여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참여기업 제한 >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LH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인 기업
- '26년 사업 기간 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5년 사업신청 가능)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 연동이 불가능한 업체
- 고용노동부 발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 사업시행 중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26년 LH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참여(예정) 중인 기업
- '26년 LH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예정) 중인 기업

3. 신청 및 선정방법

- (공모기간) '26.08.31(월) ~ 09.08(화) (9일간) 18:00 까지
- (접수방법) 상생누리에 직접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클릭 ⇒ 프로그램 검색 ⇒ “참여 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모든 서류 취합 후 1개의 ZIP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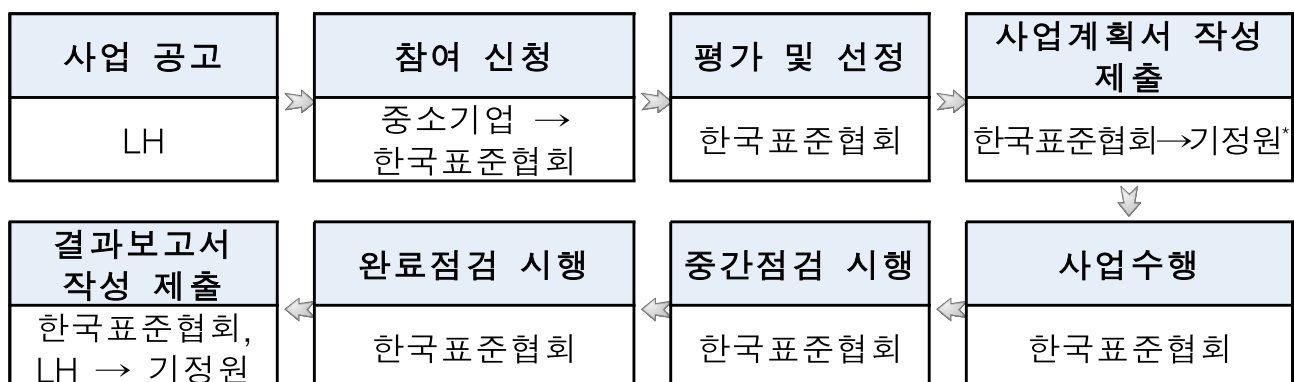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파일 형식
1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PDF
2	사업자등록증	PDF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PDF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5	'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PDF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PDF
7	회사현황, 사업계획 등 실적 관련 기타 설명(증빙) 자료 각 1부	PDF
8	[붙임1]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등 각 1부	PDF
9	[붙임2] 참여신청서 1부	PDF
10*	[붙임3] 사업계획서 1부	PDF
11	[붙임4] 사전검토 평가표	PDF

* “10.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붙임5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하게 작성 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 위원별 산술평균 종합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우대(가점) 사항
 - AI분야 기술 보유기업(5점)
 - 공모 접수 마감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미만인 기업(5점)
-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전 도입기업 사전 현장 진단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지원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최종 도입기업 선정 예정
- ※ 최종 선정 여부는 9월 상생누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메일 등)

4. 사업 추진절차



* (기정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인

- 기재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미제출로 선정 대상 제외 등 불이익 발생치 않도록 필히 제출 요망

- 도입기업으로 최종 선정 후 참가 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 선정되어 사업 참여 시 「성과공유제」, 「기술임치제도」, 「기술지킴 서비스」, 「기술보호 교육」 연계 참여 필수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설정,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목표 달성 시 별도의 성과공유제 인센티브 지급('26.12 예정)

· (기술임치제도) 중소기업 영업·기술자료를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 기술임치증 발행 및 제출 필요

· (기술지킴서비스) 온라인상의 기술유출 및 외부공격의 이상징후에 대해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 실시간 감시,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 (기술보호 교육)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면교육 1회(세부일정 추후 안내)

- 사후수준진단 및 사업 완료 판정 후 지원금 지급 예정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要(향후 별도 안내 예정)

- 본 사업은 LH 경영여건(기금출연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미추진될 수 있음

6. 문의 및 확인

□ (문 의 처) LH 스마트주택기술처 상생협력팀 이승헌 대리

(☎ 055-922-5776)

한국표준협회 홍예지 연구원

(☎ 02-6240-4860)

□ (홈페이지) LH(www.lh.or.kr) 및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사업추진일정 등 변경 시에는 LH 및 상누리 홈페이지에 해당내용 공지 예정

붙 임 : 1. 동의서 1식.

2.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전검토 평가표 1부.

5. 지원 분야 참고표 1부.

6. 제조업 분류표 1부.

7. 심의위원회 평가표 1부. 끝.

[붙임1-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이용 목적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사업 선정, 지원사업 수행,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수행 등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전자우편, 직위/직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 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 이메일, 주생산품 등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 귀하는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표준협회	지원사업 선정, 지원사업 수행,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수행 등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전자우편, 직위/직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 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 이메일, 주생산품 등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 귀하는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기업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자 성명 :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인)

[붙임1-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기술보증기금 ④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⑥창업진흥원 ⑦중소기업유통센터 ⑧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⑨한국벤처투자(주) ⑩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제 공 목 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
	제 공 항 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 기업대표 이메일, 주생산물
	보 유 · 이 용 기 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 의 를 거 부 할 권 리 및 동 의 를 거 부 할 경 우 의 불 이 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 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 공 동 의 여 부	○○○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 공 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 공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붙임1-4] 정보 활용동의서

정보 활용동의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 성명, 핸드폰번호 ② 의사소통, 정보전달, 사후관리 등 이용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3년 또는 삭제신청시까지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목적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 정보전달용
정보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3년 또는 삭제신청시까지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비동의 ☐

◆ 이메일 수신동의 [필수]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회사명

대표

(인)

한국표준협회 귀중

[붙임2] 참여신청서

[illegible]

[붙임3] 사업계획서

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원분야	(예) 운영시스템구축 분야 필수 기재	
참여목적 및 추진의지	사업지원 동기 및 필요성 * 경영여건 및 장기 비전 등 자율 기술 - 대표자 및 임직원의 혁신의지 - 자율적 경영개선 노력도(각종 컨설팅 참여실적 등)	
현황 및 문제점	기업운영 현황 및 문제점, 사업지원의 긴급성 * 개선 대상(공정 및 기술)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 기술	
개선방안 및 구축목표	지원 요청사항,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 기타 선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기업현황 등) 자료 첨부(필요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항목 확인 후 작성 요망

※ 최대 4page 이내로 작성

[붙임4] 평가표

사전검토 평가표

기업명	
-----	--

구분	검토내용	해당유무
지원 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3. LH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회 미만 참여한 기업	✓
참여 기업 제한	1. 휴·폐업중인 기업	
	2.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4. LH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인 기업	
	5. '26년 사업 기간 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 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6년 사업신청 가능)	
	6.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 연동이 불가능한 업체	
	7. 고용노동부 발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8. 사업시행 중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9. '26년 LH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참여(예정) 중인 기업	
	10. '26년 LH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예정) 중인 기업	

2026년 유 유

회사명 :

대표 :

(인)

[붙임5] 지원분야 참고표

세부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주요 시스템(ERP, MES, SCM, PLM 등) 및 ICT 자동화기술 수준을 기초 수준으로 구축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정의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영, 제조, 프로세스 등 제조혁신과 관련된 역량 수준에 대해 기초 수준에 부합한 구축지원

구분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고도	IoT/IoS기반의 CPS화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IOT/IoS화	IoT/IoS(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중간2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공장운영 통합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간 통합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별 운용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단일 모기업 의존
ICT 미적용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전화와 이메일 협업

분 야	내 용	
PI컨설팅	- 스마트공장 Master Planning, 기준정보 체계화 및 PI 실행 - 스마트공장 기술도입 범위, 방법, 필수기능 검토 및 선정 지원 - 업무 수행 프로세스 표준화, 연계성, 데이터 활용도 강화 지원 - P(생산성), Q(품질), C(원가), D(납기), S(안전), E(에너지, 환경) 성과지표 목표수립 및 실현, 기대효과 산출 등	
운영시스템 구축·자동화 포함	공장운영시스템 (MES)	- 제조회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회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
	기업자원관리시스템 (ERP)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제품개발지원시스템 (PLM)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제조자동화	- 저비용·고효율 제조 로봇(무인운반차 등) 개발·보급 - IoT센서,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 ICT연계 조건
	공정시뮬레이션	- 공장·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붙임6] 제조업 분류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코드번호	업종(중분류)	비고
C10, C11	식음료품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기] 심의위원회 평가표

심의위원회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사업참여도 (10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참여실적 없음		10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참여실적 1회 이상		5
회 사 현 황 (10점)	매출액 (5점)	2025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
		2025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
		2025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3
		2025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2
	부채비율 (5점)	부채비율 100% 미만		5
		부채비율 100% 이상 ~ 150% 미만		4
		부채비율 150% 이상 ~ 200% 미만		3
		부채비율 200% 이상		2
사업계획 (80점)		사업목적 적합성 (30점)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의 구체성	10
			사업 이해도 및 인력투입 등 계획의 적정성	10
			건설산업과의 연관성 및 적합도	10
		사업추진 필요성 (30점)	현 제조공정의 문제점 및 개선 활용성	10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	10
			도입 의지의 적극성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10
		사업참여 효과성 (20)	사업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대효과	10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 (일자리창출 등)	10
가점 (10점)		AI 분야 기술 보유기업		5
		공모 접수 마감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미만인 기업		5
합 계				110